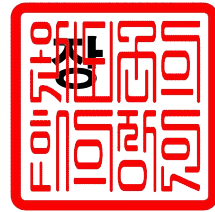


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.

2024년 4월 4일

완 도 군 의 회 의



1. 조 례 명 :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발 의 자 : 박 병 수 의원
3. 개정이유
 -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변경하고 군의원의 당연직 고문 참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.
4. 주요내용
 - 제17조(구성 등) 제1항, 제7항 개정

- “읍면에서 선출된 군의회 의원”을 “읍면이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군의원”으로 개정
- 위원의 임기 1년 → 2년으로 개정

5. 조례안예고기간 : 2024. 4. 4 . ~ 2024. 4. 9.

6. 의견제출

-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 의회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 :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(의정지원팀)

-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/ (우) 59121
(전화: 061-550-5933, FAX: 061-550-5907)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서면·전화·팩스·직접방문 등

7. 기타

-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팀(전화: 061-550-5933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서식) 1부.

2.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7조제1항 후단 중 “읍·면에서 선출된 군의회 의원”을 “읍·면이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군의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“1년”을 “2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자치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 (구성 등) ①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,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<u>읍·면에서 선출된 군의회 의원</u>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.</p> <p>② ~ ⑥ (생략)</p> <p>⑦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<u>1년</u>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⑧ (생략)</p>	<p>제17조 (구성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읍·면이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군의원</u>----- ----- -----</p> <p>②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----- ----- <u>2년</u>----- ----- -----</p> <p>⑧ (현행과 같음)</p>